

物質特許制度 導入에 따른 企業의 對應戰略



金 允 培

(辨理士·國際工業所有權研究所長)

目 次

- I. 特許制度와 物質特許
- II. 韓美間의 通商摩擦과 物質特許導入
- III. 化學物質特許, 用途特許, 醫藥特許
- IV. 物質特許制度導入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 V. 物質特許導入에 대한 企業의 對策

I. 特許制度와 物質特許

特許制度(Patent System)는 발명자가 발명한 기술내용을 特許公報등을 통하여 산업 사회에 공개토록 하여 관련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발명자는 발명을 공개한 代價로 特許權이라는 독점권을 부여 받는다.

한편 사회각계는 타인이 이룩한 기술 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特許公報등을 통하여 대가없이 입수할 수 있어 남이 이룩해 놓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더 좋은 기술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를 격려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발명내용의 공개에 의하여 국가산업 발달을 꾀할 수 있는 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의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특허는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인 知的所有權의 일종이다.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無體財產權을 말하며 이에는 산업적무체재산권인 工業所有權과 예술적, 인문과학적, 창작권인 著作權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은 지적소유권 중 산업상 직접 이용가능한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및 商標權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예술이나 인문과학 등 학문에 속한 人間の 창작을 보호(창작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서, 음반, 테이프, 사진, 필름(영화), 그림, 악보등 각종의 창작물을 보호(공표, 출판, 공연, 방송, 연주, 전시등을 독점하는 권한)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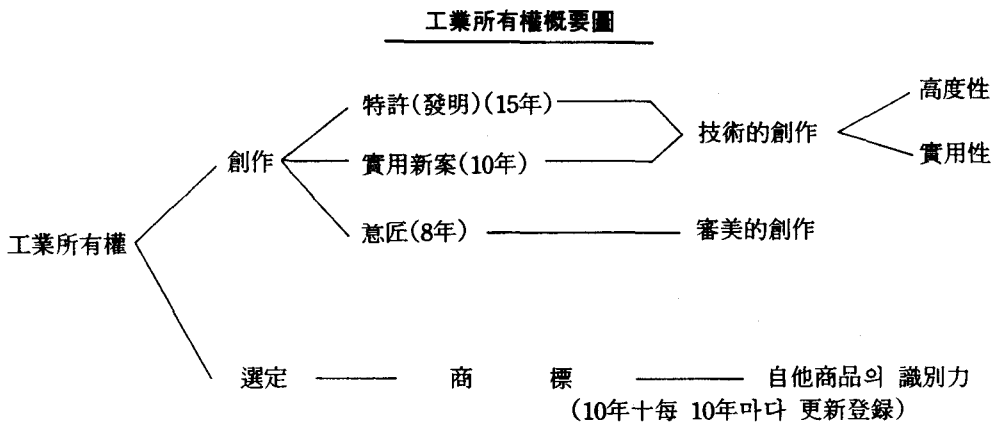
著作權은 따로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著作物發生(「예」: 출판)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著作者的 생존중 및 死後50年間 보호된다.

일부 선진국들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著作權으로 보호해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7년 7

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방식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다.

발명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을 총칭하는 工業所有權은 일정한 기술적창작을 한 자가 이를 국가 사회에 공개하는 대신 국가의 公權力으로 이들 발명자, 고안자들에게 일정한기간동안 獨占排他的인 권리를 부여하여 유효

기간동안 기술적 재산권으로서의 독점권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特許權등을 설정해 줄 때에는 그 내용을 出願公告(발명내용을 特許公報에 게재하는 것)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公開하도록 하며 일정한 存續期間이 지나면 社會一般에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特許(Patent, invention Patent, Letters Patent)는 공업 소유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발명을 한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의 것”으로서 ① 創作 즉 獨創의 사상이고 ② 自然法則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③ 技術의 효과를 낼 수 있고 ④ 높은 수준의 창작이어야 하고 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特許는 출원후 審査와 出願公告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비로서 권리가 생기며 그 존속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15年間이다.

새로운 物件, 장치나 제조방법등에 관한 발명은 特許出願을 할 수 있다.

化學物質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이미 종래의 特許法上 不特許사유를 삭제하여 그 제조방법(소위 製法特許)과 함께 화학물질 그 자체를 보호하는 “物質特許” 제도를 채택하는 特許法改

정을 하여 이제 바야흐로 물질특허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II. 韓美間의 通商摩擦과 物質特許導入

—韓美間의 知的所有權摩擦—

우리의 對美輸出量이 나날이 늘고 있고 우리나라 第一의 交易相對國이 美國이며 미국측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第7位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데 따르는 무역마찰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1986년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美國의 우리나라의 일부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덤핑提訴, 반 의도적인 높은 덤핑율의 적용, 相計關稅의 강화, 일반특혜관세(GSP)의 축소 그리고 지적소유권의 문호개방요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등에 대한 모조행위 금지요구 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미간의 지적소유권마찰은 ① 제도적 측면과 ② 현행제도하에서의 모조행위등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도적 측면의 마찰로는

①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요구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로 1987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② 저작권법개정과 국제저작권보호협약 가입요구

저작권법이 이미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요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④ 반도체칩(Semiconductor Chip)의 보호요구 현재 미국측의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모조행위에 의한 마찰로는

① 국내에 등록된 미국상표권등의 침해문제

의류, 가방, 가죽제품등 패션계통에서 미국상표가 무단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商標侵害行爲로서 공업소유권의 使用秩序確立이라는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하고 또한 사실상 타인의 상표도용이 국내시장의 교란과 소비자의 사치풍조 조장 외에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므로 범국민적 차원이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② 미국에는 등록설정되어 있고, 또 周知, 著名한 것이 국내에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標章의 盜用, 模造行爲문제

이는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不正競爭防止法의 규제대상이다.

③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관세에서 압류되는 문제

원산지 허위표시상품이나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은 미국세관에서

압류하고 있으며 선적항으로 되돌려 보내던 종래의 방침대신에 폐기 또는 압류등의 강경책으로 인하여 일부 수출품이 관세등에 묶여 있거나 폐기처분을 당하고 있다.

④ 미국시장에서의 유통과정에서의 特許紛糾 일단 미국에 수출한 후 유통과정에서 특허침해문제가 법정으로 옮겨져 特許紛爭을 일으키고 있다.

특허제도는 內國산업보호를 목적으로한 제도로서 국가산업, 정책상의 이유로 특정의 발명을 不特許事由로 하여 국가의 산업정책으로 일부 발명의 독점화를 막아 선진국의 기술독점을 배제하여 국내산업기술계가 선진국의 기술예속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특허법(改正前 舊法)은 不特許사유(특허법 제4조 : 特許를 받을 수 없는 발명)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 1)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 2) 의약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
- 3)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 4)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 5)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발명
- 6)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위의 不特許사유는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나 선진기술보유국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특정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였었다.

물질특허(발명)라 함은 上記 不特許中 제1항 내지 제3항에 속하는 物(物質)등을 일컬으며 제5항의 용도발명도 광의의 물질발명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내산업(특히 「화학 분야」)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거의 모두가 선진기업의

독무대가 되는 物質特許制度를 인정치 않고 物質을 제조하는 방법만을 特許로서 인정하는 등 內國産業保護와 內國民保護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시대의 변천과 아울러서 우리경제가 어느정도 성장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력이 과잉선진되는 상황아래서 선진국 특히 「미국」 등에서는 자유무역거래의 정신과 우리의 경제력을 과신하는 나머지 국내산업기술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보아 선진국과 동등하게 物質特許制度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량이 늘어나고 특히, 미국에의 수출이 급성장하고, 무역불균형이 나타나자 이에 당황한 미국이 무역불균형등의 시정을 위한 한 방편으로 무역장벽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知的 所有權 특히 物質特許문제를 거론하였다.

우리나라가 1984년초에 가입한 특허협력조약(PCT)이 1984년 9월부터 발효되어 PCT제도에 의한 조약국의 특허출원(“물질특허”의 경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통일을 기하는 입장에서 미국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물질특허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압력이 없었더라도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스스로 物質特許制度를 도입할 것이 예상되어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87년 7월 1일부터 채용하고 있는 物質特許制度의 導入은 自生的이라기 보다는 외국 특히 미국측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다.

Ⅲ. 化學物質特許, 用途特許, 醫藥特許

1. 化學物質特許

1) 化學物質의 意義

化學物質特許라함은 化學方法으로 製造되는

物質(化學物質)自體의 發明에 對하여 부여되는 特許이며, 基本的으로 從來의 「物의發明」에 있어서의 概念을 그대로 適用할 수 있다.

化學物質의 發明에 있어 特許權의 効力은 그 化學物質이 어떤 方法으로 製造되던가 또는 어떤 用途로 使用되던지 간에 關係없이 化學物質의 生産, 使用등에 미친다. 그리고 새로운 製法이나 用途를 發明했을 때는 化學物質特許와는 별도의 特許가 부여되던가 先願의 化學物質特許와 後願의 化學物質特許 또는 用途特許간에 從屬關係가 생기며, 따라서 後願의 特許發明의 實施에는 先願 化學物質特許權者의 實施許諾을 必要로 한다. 이 경우 先願化學物質特許權者도 後願의 새로운 製法이나 用途에 있어서의 特許發明을 實施코자 할 때는 後願特許權者의 實施許諾을 必要로 한다.

그러나 化學物質特許는 그 物質自體에 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方法으로 製造하더라도 또 어떠한 用途에 使用하더라도 化學物質이 特許權에 포함되므로 方法特許에 비해 그 權利는 현저하게 廣範하고 強大해진다. 方法特許에 있어서는 그 製造方法이 다르면 이 方法에 對하여 權利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떤 新規化合物을 完全하게 保護하려면 그 物質의 製造方法에 對하여 可能한 것을 모두 실험하여 모두 出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權利防衛上 多數의 防法出願을 할 必要가 있다. 그렇지만 物質特許는 最終物質의 新規化合物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一件의 物質特許出願으로도 充分하다.

化學物質發明의 特許明細書에는 當該化合物의 적어도 하나의 製造防法과 用途를 記載할 必要가 있으며 이것은 技術公開을 爲해 要求된다. 또한 化合物의 物理的 및 化學的 性質을 될 수 있는 대로 詳細하게 記載할 必要가 있으며 이것은 化合物을 固定(Identification)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要求되는 것이며, 이 경우 必要한 데이터는 物質이 실제로 製造되어 있으며 다른 物質과 相異하고 항상 同一物質이 얻어지고 있음을 確

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化學物質特許는 化學物質이 이제까지 製造된 사실이 없고 産業上 有用하며, 從來의 것보다 進歩한 것에 許與된다.

2) 物質特許의 對象物

化學物質이라 함은 化學方法으로 生産하는 物質을 말하는 것으로 元素 및 化合物을 의미하며 化學反應으로 제조되는 것(天然에 存在하는 것을 原料로 하여 化學적으로 變化시킨 것도 포함)과 天然에 존재하는 것(天然物質)이 포함된다. 또 物理的 方法, 예컨데 抽出 蒸留등에 依하여 제조되지만 同時に 化學方法에 依해서 제조되는 物質도 포함된다.

化學的 方法으로 제조되는 物質로서는 다음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化學的 方法으로 製造되었던가 製造될 可能性이 있는 것.

현실로 化學反應으로 製造된 것은 勿論이지만, 天然物質과 같이 단지 抽出에 依하여만 入手할 수 있으며, 아직 合成되지 않은 것이라도 그 構造가 判明되면 언젠가는 그 合成이 可能하다 하겠다. 化學方法으로 製造된 것이라면 설사 라세미混合物, 시트-트란스體 混合物 또는 할로젠化 生性物로서, 할로젠의 數가 相異한 것의 混合物, 重合體로서 分子量이 다른 것의 混合物이라도 化學物質로 된다.

② 化學的 單一物

單一의 化學物質로서 混合物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混合物은 化學物質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化學方法 以外에 依하여도 예컨데 物理的 方法으로도 製造되지만 化學方法으로 製造되는 化學物質.

化學的方法과 物理的方法의 어느 것에 依해서도 製造되지만 化學方法, 예컨데 合成反應에 依하여 製造된 경우 만을 化學物質이라 부르고 物理的方法, 예컨데 抽出, 混合으로 製造된 경우에

는 化學物質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 用途特許

化學物質에 있어서 用途發明은 一般的으로 物의 屬性的 發見에 基礎를 두어 그 物을 特定한 用途에 使用하는 것에 있어서의 發明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用途發明이라 함은 特定한 單一化合物을 特定한 用途로 使用하는 것에 대한 發明을 말한다.

化學物質에 있어서는 素材로서의 性格上 본래 用途가 하나로 限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用途는 化學物質의 外觀으로 부터 自명한 것으로 하여 도출되지 않는다.

결국, 一般的으로 化學物質은 潛在적으로 用途에 있어서 多面性を 띠고 用途와의 사이가 自明하지 아니한 것이다. 化學物質에 있어서 用途發明의 成立可能性은 커지고 있으며, 사실 用途特許가 대부분 化學物質에서 차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新規化學物質이 特許되기 위해서는 有用性的 기초로 되는 用途를 갖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用途를 發見하기까지는 特許出願을 할 수 없으므로 用途의 發見을 促進하는 것은 중요하다. 新規物質의 合成은 容易하게 했더라도 진실로 우수한 用途를 가진 것을 發見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설사 物質特許를 取得하여 第3자가 別個의 우수한 用途로서 特許를 取得했을 경우 이것을 實施함에는 實施許諾을 받지않으면 實施할 수 없음을 考慮하면 用途의 發見도 新規物質의 合成 또는 發見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편, 用途發明은 特定한 單一化合物을 特定한 用途에 사용되는 점에 發明이 存在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그 單一化合物로부터된 特定한 用途를 明示한 「劑」, 單一化合物을 有効성분으로 하여 보조성분에 特徵이 없는 特定한 用途를 明示한

「造成物」, 그 化合物을 그 用途에 사용하는 「方法」 또는 그 化合物을 사용하는 점에서만 特徵이 있는 「製品의 製造方法(단, 單一化合物의 用途가 그대로 製品의 用途로 되어있는 경우는 제외함)」 혹은 그 化合物을 사용하는 점에서만 特徵이 있는 製品의 形態로 表現하는 것을 그 發明의 본질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認定된다.

다른 한편, 用途發明을 「用途를 가진 化合物의 製造方法」 또는 「化合物을 보조성분으로 混合하는 用途를 가진 조성물의 製造方法」으로 하여 表現하는 것은 그 表現의 發明의 본질을 적절히 表現하지 아니한 것이며, 더우기 그 化合物 또는 그 조성물을 製造하는 것 自體로 發明이 存在하는 경우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부적당하다.

따라서, 特許請求의 범위의 記載가 「用途를 가진 單一化合物의 製造方法」 또는 「單一化合物을 보조성분과 混合하는 用途를 가진 조성물의 製造方法」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用途發明으로서의 取扱하지 않으며 製造方法의 發明으로 본다.

3. 醫藥特許

1) 醫藥特許의 意義

의약발명이라 함은 의약(사람의 질병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物을 말함) 또는 그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發明을 말한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을 의약으로서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에 관한 것이 用途特許이다.

2) 醫藥特許의 形態

일반적으로 방법특허제도하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의약발명은 물질특허제도의 채용에 의해 새로운 특허부여의 대상으로 되며, 의약발명은 편의상 그 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의약의 용도발명
- ② 배합제의약 및 제제의약의 발명
- ③ 백신 및 천연물의약의 발명
- ④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가진 화학물질의 발명.

의약의 용도발명이라 함은 어느 化學物質을 의약으로서의 用途에 사용하는 것에 요지가 있는 발명을 말하며, 이를 단제의약의 발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은 新規이든지 公知이든간에 문제되지 않는다.

배합제의약의 발명이라 함은 복수의 약효성분을 단순히 혼합하여서 된 의약용조성물의 발명을 말한다.

제제의 발명이라 함은 약효성분과 그 약효의 지속화, 안정화, 가용화를 위해 약효성분에 대하여 보조적효과를 주는 物質을 단순히 混合하여서 된 醫藥造成物의 發明이나 다층정제의 제형자체에 요지가 있는 발명등을 말한다.

상기한 ① ② ③은 전형적인 의약발명이라고 하며 ④는 전형적인 의약발명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화학물질의 발명에 속한다.

IV. 물질특허제도도입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 도입 실시하게 되는 물질특허제도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미국등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타의의 도입임을 생각할 때 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은 자못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계는 아직 물질특허제도를 수용할 만치 상당한 기술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출원되는 특허출원증 정밀화학분야의 경우 외국인출원의 비중이 약 90~95%를 점하고 있으며, 더우기 출원건수보다

출원발명의 질에 있어서 內國人에 비하여 外國人出願의 비율이 월등한 것등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연이어 현재의 특허출원추세등으로 보아 物質特許制度가 도입되면 미국인의 출원이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관련産業의 기술수준이 유치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기간동안 物質特許는 외국인에게 독점될 가능성이 있다.

물질특허제도를 1987年 7月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이 制度의 시행이후에 출원되는 物質特許는 심사기간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2, 3年 이후라야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때 가서야 우리業界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작년 韓美間의 通商協商의 결과 현재 특허청에 출원중인 美國人소유의 製法特許出願은 物質特許로 변경출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빠르면 1988年初부터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物質特許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현재 출원계류중인 製法特許를 物質特許로 변경출원하여 權利를 早期에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위 Pipeline Product라 하여 1980年 1月 1日에서 1987年 6月 30日사이에 美國에서 特許된 미국인 소유의 物質特許중 아직까지(1987年 3月 31日)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 중 어느곳에서도 未市販된 物質은 우리나라에서 10年間 소급 보호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가지 심각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기왕에 미국에서 특허된 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급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公知된 他國에서 特許된 것을 소급해서 特許를 인정하는 이유가 남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立法조치가 아닌 행정지도라 하나 정밀화학공업의 특성상 認許可등 행정기관의 協助없이 사업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 경우에 있어서의 행정지도는 立法조치와 별다른 것이 아닌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 出願조차 하지 아니한 他國의

特許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Paris 조약」의 회원국으로서 「屬地主義」는 파리조약의 3대 기본 정신중의 하나인 것이다. 「파리조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각국의 특허제도는 그 나라에 출원등록된 특허만을 보호하고 또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 설정된 국가의 領域內에서만 미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위 Pipeline Product 物質特許는 「Paris 조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면서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당하게 보호될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셋째, 각국은 각각 고유의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特許出願등록절차나 심사기준등이 서로 다르므로 미국에서 심사하여 등록된 특허를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行政指導」라고는 하지만)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미국 物質特許를 우리나라에서 소급보호함에 있어서 당초 우리 당국자는 보호대상 特許가 얼마되지 않을 줄 알고서 쉽게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미국측이 우리나라에 통보한 대상 특허는 1천건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의 권리자들이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장에라도 우리 업계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物質特許制度 도입에 따른 영향은 이 制度의 시행이후 출원되어 권리를 설정하게 될 정상적인 물질특허의 실시(빨라야 2, 3년 이후가 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르는 영향과 미국인에게만 소급 인정해주는 소위 Pipeline Product의 권리 행사에 따르는 영향을 함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새로운 物質特許의 시행에 따라 우리 산업계는 모두 「物質特許時代」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① 化學物質이나 의약품의 가격의 引上要因이 생긴다.

종래까지 特許料를 물지 않고 구입하던 원료

등에 로열티를 물어야 하므로 가격의 소폭 또는 대폭 인상요인이 생긴다.

② 製造技術, 製造方法 선택이 제한 받는다.

종래 製法特許下에서는 우회생산이 가능하나 物質特許下에서는 同一物質에 대한 우회생산은 法的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外國의 特許權者가 內國기업과 기술제휴를 하기보다는 직접투자를 하여 기술과 제품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物質特許라는 독점권을 가지고 국내에 직접투자(일부 合作投資도 예상됨) 企業을 만들어 100% 出資 子會社를 통하여 外國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원격조작하여 특정제품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

④ 內國企業의 기술개발의 의욕상실.

종래에는 同一製品이라도 製法이 다르면 별개로서 취급되어 國內기업들이 동일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하여 부수적으로 좋은 개발기술이 축적 活用되었으나, 物質特許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우회기술 개발이 法的으로 금지되어 新技術개발 의욕이 상실될 것이다.

⑤ 特定 原料구입이 어려워진다.

우리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지배적인 특허권자가 자기회사의 대체품판매를 위하여 특정원료의 공급을 중지 또는 제한할 염려가 있다.

⑥ 內國기업들이 기술개발보다는 기술도입쪽에 치중한다.

新物質의 개발에는 상당기간(3年 내지 7年)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므로 자력에 의한 기술개발에 의하기 보다는 비교적 손쉬운 기술도입을 하여 선진기술에의 예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⑦ 中小企業이 설 땅을 잃을 우려가 있다.

자체기술개발능력이 기술도입능력에 상대적으로 약한 中小企業이 대기업에 밀려 설 땅을 잃기 쉽다.

⑧ 의약품가격의 인상은 국민보호를 위협한다.

신개발 의약품자체에 독점권이 형성되면 약품가가 폭등하여 환자등의 치료가 어려워져 전체 국민의 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독점공급에 의한 비싼 원료를 구입하게 되므로 해외원료구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化學계열업체는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⑩ 과도한 R&D 투자로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진다.

치열한 기술개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막대한 R&D 투자를 해야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R&D에의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기업채산성이 떨어져 시장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제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

① 필연적으로 기술개발투자를 해야 하므로 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② 物質特許의 도입으로 新物質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

③ 불꽃튀는 기술개발경쟁과 이에 대한 상당한 보호를 해줌으로서 관련분야 기술인력의 개발의 욕을 복돋아 줄 수 있다.

④ 결국은 도입하여야 할 物質特許制度를 早期에 도입하여 기술경쟁력을 早期에 일으켜 세운다.

⑤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의한 기술축적에 의하여 해외기술수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

V. 物質特許導入에 대한 企業의 對策

物質特許도입에 따르는 영향이 우리가 當初(제도도입전 이에 대한 찬반論議를 할 때)에 예상했던것과는 다른 돌발적(소위 미국 Pipeline

Product 物質特許의 행정지도에 의한 향후 10년간 소급보호)인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 대책은 응급대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中長期對策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긴급히 마련해야할 대책으로서는

① 미국 物質特許의 소급보호에 따라 既存의 製品이 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대비검토하여야 한다.

② 현재 개발중에 있거나 기획중인 製品에 대해서도 저촉여부를 대비검토하여야 한다.

③ 既存原料 購入先을 점검하여 이에 저촉여부를 대비 검토하여 原料需給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한다.

④ Pipeline Product 특허를 근거로 그 소유자가 이를 국내에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등을 계획할 경우 기존제품 또는 企劃製品등과 상충 보완 내지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대비검토하여 市場잠식이나 市場상실이 예상되는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⑤ 각종 特許情報를 入手檢索하여 特許紛爭의 사전예방에 活用하도록 對應策을 세운다.

中長期對策으로서는

① 技術先進國의 각종 情報의 早期入手體制를

갖추고 이를 실질적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社內 技術情報의 流通關係를 확립한다.

② 物質特許등 관련 技術정보를 수집분석하여 技術발전의 추세를 정확히 분석하여 尙來 技術開發지침에 참고한다.

③ 既存 先進技術導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중 導入消化하도록 노력한다.

④ 研究開發분야에의 中·長期投資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비를 증액하도록 노력한다.

⑤ 既存研究開發體制를 재정비 한다.

⑥ 先進技術(物質特許分野)과 競爭이 예상되는 분야를 早期에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⑦ 國內관련企業끼리 連帶하여 相關情報의 共同利用등 긴밀한 유대를 강화한다.

⑧ 예상되는 紛爭을 예방하기 위한 技術과 製品對比調査를 철저히 한다.

⑨ 紛爭(特許紛爭)처리能力배양을 위하여 特許訴訟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전에 資質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⑩ 研究者, 技術者등 相關업계 종사자는 新技術入手와 研究開發에 최선을 다하여 技術戰爭에서 이길수 있는 자질을 연마하고 우리 精密化學業界를 先進國水準에 올릴 수 있는 정신적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혼란이 있는곳에 북괴간첩 스며든다